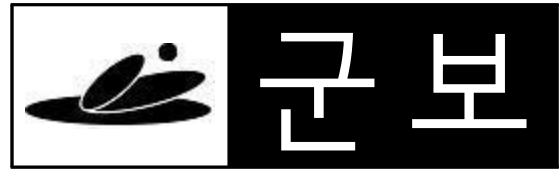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50호 2022. 2. 4.(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173호 :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예산군 공고 제193호 :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 예산군 공고 제194호 :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9
- 예산군 공고 제195호 :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0

회									
람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담당관 ☎ 339-7144)

예산군 공고 제2022-173호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팬데믹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과 원자재 가격 불안 및 공급망 차질 등 경제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 및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변경(안 제2조제1호)
- 나.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제5호부터 제9호)
- 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가(안 제14조의3)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경제과 (참조: 기업지원팀 ☎ 041-339-7274, fax : 041-339-725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22. 2. 4. ~ 2022. 2. 24.(20일간)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우 32435)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관련법령 발췌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군 지역 안”을 “이란 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을 ““근로자”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7.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 따른 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따른 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지역금고

바.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저축은행

사.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9. “신용보증기관”이란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6조제1호 중 “**직업병 다발**”을 “**직업병이 많이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유망중소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사행산업 업종,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모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 지역 안에**”를 “**군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억 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을 “**공공기관의**”로, “**구**

입시”를 “구입 시”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 후단 중 “제2항 제2호의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을 “제2항제2호의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전한”을 “경영안정 및 건전한”으로,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으로 발생하는 이자 부분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로, “일부를 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례보증의 재원 및 수수료

2.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3.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세부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기업지원”을 “예산군 기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며,”를 “호선하며, 위촉직”으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를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으로 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제16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행산업 업종,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모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안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p> <p>2. “기업인”이라 함은 군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p> <p>3.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p> <p>4.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중소기업”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p> <p>2. -----이란 군----- ----- -----.</p> <p>3. -----단체”란 ----- ----- -----.</p> <p>4. “근로자”란 ----- ----- -----.</p> <p>5.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p>

<신 설>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
한다.

6.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용
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주는 것
을 말한다.

<신 설>

7.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
증기관이 중소기업에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비용을 말한
다.

<신 설>

8.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 따른
조합

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따
른 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
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
른 저축은행

<신 설>

제6조(적용배제) 군수는 우수기업 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2. 3. (생략)
- 4. 기타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9. “신용보증기관”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6조(적용배제) -----

-----.

- 1. ----- 직업병이 많이 발생하는 -----
- 2.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

제8조(대상 등) ① -----

(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종업원 수 300명 미만인 사행산업 업종,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모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2. 군 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

4. (생략)

제11조(판매 및 기술 지원) ① (생략)

② 군수는 중소기업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SOC사업 및 물품 구입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4조의2(상·하수도 요금 감면

--- “유망 중소기업”-----
-----.

②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
중소기업

2. 군에 -----

3. ----- 10억원 -----

4. (현행과 같음)

제11조(판매 및 기술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공기관의 -----

----- 구입 시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 설>

<신 설>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

3. 그 밖에 군수가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세부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

예산군 기업지원 -----

② -----

1.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

③ -----
--- 1명을 포함한 15명 -----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 1. ~ 4. (생략)
- 5.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생략)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호선하며, 위촉직 -----
-----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

- ⑤ ----- 한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

제16조(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명-----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 필요한 -----
-----.

<삭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군 공고 제2022-193호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규제입증책임제 근거제정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지원을 확대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위임 법령 명시(안 제1조)

나. 규제입증책임제 근거 마련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에 기존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호)

- (현행) 기존규제의 정비

- (개정안)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을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마.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3조제5항)

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사.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소관 기관 개정(안 제6조)

-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 (개정안) 규제개혁 업무 총괄부서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4. 입법예고 기간 : 2022. 2. 4. ~ 2. 24.(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참조 : 새마을규제개혁팀 ☎ 041-339-7232, FAX : 041-339-72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

- 전자메일 : moutons@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232, fax : (041)339-720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기능)”을“(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심의 조정한다”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공표”를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규제개선”을 “규제개혁”으로 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심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의 제목“(구성)”을“(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되어야”를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재생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건축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

4. 중소기업의 대표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군수는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제5항 중 “실·과장 (담당포함)”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위원회 소속하에”를 “규제개혁 업무 총괄부서에 예산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정비 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답하도록 규제개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 조정한다.</u></p>	<p>제2조(설치 및 기능)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p>
<p>1. <u>기존규제의 정비</u></p>	<p>----- <u>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2. <u>규제의 등록·공표</u></p>	<p>1. <u>기존규제의 심사, 규제 정비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u></p>
<p>3. <u>규제의 신설·강화</u></p>	<p>2. ----- <u>등록·공표에 관한 사항</u></p>
<p>4. <u>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u></p>	<p>3. <u>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관한 심사에 관한 사항</u></p>
<p>5. (생략)</p>	<p>4. <u>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u></p>
<p>6. 그 밖에 <u>규제개선과</u> 관련하</p>	<p>5. (현행과 같음)</p> <p>6. ----- <u>규제개혁</u>-----</p>

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3조(구성 등) ① -----

-----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재생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건축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임원으로 있었던 사람

4. 중소기업의 대표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

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4조(회의) ① ~ ④ (생략)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담당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생략)

제5조(간사) ① (생략)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민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부서장-----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팀장-----
--.

제6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규제개
혁 업무 총괄부서에 예산군 --.

【붙임 1】 관계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총무과장

예산군 공고 제2022-194호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20.4월)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정비하고, 예산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업무에 공동체 형성 추가 및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조정(안 제5조제1호제3호)
- 나.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및 원활한 분과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 정수 확대(안 제6조)
- (현행) 20명 이상 50명 이하 / (개정안) 30명 이상 50명 이하
- 다. 선거권 연령에 맞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연령 하향(안 제7조)
- (현행) 만 19세 이상 / (개정안) 만 18세 이상
- 라. 다문화 가정 등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추가(안 제7조제2호)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추가
- 마. 주민자치회의 권한 삭제(제8조 삭제)
- 주민자치회의 기능(제5조)와 권한(제8조) 규정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삭제
- 바. 위원의 선정 시 여성위원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개정(안 제9조)
- 특정 성별이 각호별 위원 총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
- 사. 주민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위원의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시간 확대(안 제9조제2항)
- (현행) 4시간 이상 / (개정안) 6시간 이상
- 아. 위원 모집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모집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9조제10항)
- 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된 자원봉사의 기본방향(무보수성)과 일치성 제고(안 제11조제4항)
- 차. 감사결과를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에도 제출·보고토록 하여 공개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 카.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안 제14조)

- 타. 위원회 사임 또는 해촉 등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임기와 임기가 끝난 위원회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명시(안 제19조)
- 파.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직무, 운영 등 신설(안 제23조~제26조)
- 하.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4. 입법예고 기간 : 2022. 2. 4. ~ 2. 24.(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참조 : 새마을규제개혁팀 ☎ 041-339-7234, FAX : 041-339-72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
- 전자메일 : jjs1025@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234, fax : (041)339-720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소를 설치 할”을 “분회를 설치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분소”를 “분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협의업무 :”를 “협의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수탁업무 :”를 “수탁업무:”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3호) 중 “업무 :”를 “업무:”로, “발간”을 “발간, 공동체 형성”으로 한다.

제6조 중 “2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9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를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개모집”을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으로, “총원의 100분의 60 이내”를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을 “추천모집 위원: 해당”으로, “100분의 40 이내”를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시간”을 “6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읍·면장은”을 “주민자치회는”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를 “제1항에 따른 간사”로, “범위”를 “범위 안”으로, “수 있다”를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연”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회 이상”을 “1회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제4항 중 “진행 할”을 “진행할”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임기가 끝난 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위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를 “주민자치협의회”로 한다.

제4장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5장제27조 및 제28조로 하고,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주민자치협의회 설치)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읍·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3. 읍·면 주민자치위원 상호 간 친목 및 화합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 교환과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종전의 제22조)제2항 중 “구성시”를 “구성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읍·면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각각 1명의 임원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경우 회장이 지명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앞에 “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를 삽입한다.

제24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9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 ----- ----- ----- -----.</p>
<p>제4조(설치 등)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u>분소를 설치</u>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u>분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u> 지역</p> <p>3. (생략)</p>	<p>제4조(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분회를 설치</u>할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분회</u>----- --</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p>	<p>제5조(기능)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p>

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

2. 협의업무: -----
--

3. 수탁업무: -----
-- 않는 -----

--

1. ----- 업무: -----

----- 발간, 공동체
형성-----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
----- 30명 -----
-----.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18
세 -----

-----.

없는 사람과 예산군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생략)

<신설>

2. 3. (생략)

② (생략)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1. (현행과 같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
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
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
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
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
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여성위원의 참
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전
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
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
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에서 총원의 100분의 60 이내

2.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
·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
람 중에서 100분의 40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

제9조(위원의 선정) ① -----

----- . -----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

----- .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

-----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

----- 전체 위원의 10분
의 4 이하

② -----

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생략)

④ 읍·면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신설>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③ (생략)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생략)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 6시간 -----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자치회는 -----
-- 따른 -----
-----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⑤ ~ ⑨ (현행과 같음)

⑩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항에 따른 간사 -----

----- 범위 안 -----
----- 수 -----
있고,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신설>

-----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

제14조 (주민총회) ① -----
-- 1회이상 -----

--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진행할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임기가 끝난 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위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협의회
제22조(주민자치협의회 설치) 주

<신 설>

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상호협력·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읍·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3. 읍·면 주민자치위원 상호간 친목 및 화합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 교환과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제24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읍·면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각각 1명의 임원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경우 회장이 지명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의

<신 설>

재직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26조(협회의 운영) ① 협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생략)

② 군수는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성

시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
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제23조 (생 략)

제5장 보칙

<신 설>

제24조 ~ 제26조 (생 략)

시 -----

-----.

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
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28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삭 제>

제6장 보칙

제29조 ~ 제31조 (현행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와 같음)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党性), 비종파성(非宗党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 (생략)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연간 소요예상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 총무과장

예산군 공고 제2022-195호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수의 성별 등을 보완·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
-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23조)
 - (현행) 실비 지급 / (개정안) 실비 및 수당 지급
- 다. 규칙은 위임이 없더라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 삭제(제24조 삭제)

4. 입법예고 기간 : 2022. 2. 4. ~ 2. 24.(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총무과(참조 : 새마을규제개혁팀 ☎ 041-339-7234, FAX : 041-339-72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총무과 새마을규제개혁팀
- 전자메일 : jjs1025@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234, fax : (041)339-720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언론계,문화·예술계,관계,경제계,주민등”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주민 등”으로, “1/3을”을 “3분의 1을”로,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범위내에서 실비를”을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7조(구성등) ①·② (생략)</p> <p>③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u>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주민 등</u>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u>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7조(구성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주민 등</u> ----- ----- ----- <u>3분의 1을</u> ----- ----- <u>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u> ----- -----.</p>
<p>④ ~ ⑦ (생략)</p> <p>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제23조(실비보상등) ----- ----- ----- ----- <u>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u> -----.</p>
<p>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붙임 1】 관계 법령

□ □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연간 소요예상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4. 작성자 : 총무과장